仲裁硏究, 第 22 卷 第 1 號
2012년 3월 2일 발행, pp. 3~22

논문접수일 2012. 2. 09.
심사수정일 2012. 2. 21.
게재확정일 2012. 2. 23.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김 태 훈**
Tae-Hoon Kim
차 경 자***
Kyung-Ja Cha

<목 차>

Ⅰ 서론
Ⅱ. KCAB 중재규칙의 연혁 및 개정의 필요성
Ⅲ. KCAB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Ⅳ. KCAB 국내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Ⅴ. 결론

주제어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국내중재규칙, 신속절차, 중재비용

---

* 본 논문은 한국중재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주 저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팀장
*** 교신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Ⅰ. 서 론

글로벌화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국제상사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도 국제중재의 자국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중재기관 중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국가별 중재기관으로는 영국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 '중립성'과 '높은 국제화수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1] 중재지로는 런던, 파리, 뉴욕과 제네바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는데, 중재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정적인 '법제 인프라'인 것으로 나타났다.[2] 이 결과는 국제중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재기관이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경쟁력 있는 법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들어 각국 중재기관들이 중재규칙을 새로이 개정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에 힘입은 아시아지역 중재기관이 가장 적극적이다. LCIA의 인도 지부는 2010년 4월, 싱가포르국제중재위원회(SIAC)는 2010년 7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KLRCA)는 2010년 8월, 홍콩국제중재위원회(HKIAC)는 2011년 6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ACICA)는 2011년 8월부터 새로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도 중재규칙 개정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국제중재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점차 국제중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수준 높은 외국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재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6월 29일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KCAB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석광현(2008)은[3]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근 개정에 주요한 참고가 되었으며, 박양섭(2007)과[4] 신군재(2008)는[5] 각각 인도중재원

1)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pp.22-23.
2) 전게자료, pp.17-18.
3)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8.
4) 박양섭,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인도중재원 중재규칙 비교 연구",「무역상무연구」, 제3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5)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ICA)과 중국 CIETAC의 중재규칙과 비교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개정이전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2011년 개정된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는 국제중재규칙의 내용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정일(2011)이[6] 유일하지만, 국내중재규칙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에 개정된 KCAB의 국제 및 국내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며, 본 논의에 앞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중재규칙의 개정연혁과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국제중재규칙과 국내중재규칙으로 나누어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KCAB 중재규칙의 개정 연혁 및 필요성

1. KCAB의 중재규칙 개정 연혁

(1) 1960년대-1980년대 상사중재규칙 제정 및 개정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로 '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가 동년 10월 13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총 10개장 52조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7]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사중재업무를 관할할 기관으로 동년 3월 22일 중재원의 전신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상사중재규칙'은 1970년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개편되면서 '대한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기존 규칙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대폭 변경과 명칭 변경을 포함한 개정이 1973년 4월 3일(대법원 승인일자)에 이루어졌다. 1983년 5월 11일(대법원 승인일자)에는 국내중재 활성화 계획에 따른 국내중재요금 하향 조정 등 국내외 분쟁해결책 모색에 있어 중재제도의 활용을 위해 규칙이 개정되었다.[8] 1989년 11월 16일(대법원 승인일자)에는 중재사건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중재인 선정절차상의 지연배제, 사무국의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무국조항, 신속절차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2) 1990년대 상사중재규칙 개정

1993년 12월 14일(대법원 승인일자)에는 중재규칙과 실무와의 괴리, 국제상사중재의 흐

2008.

6) 서정일,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7) 대한상사중재원,「상사중재 3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1996, p.58.

8) 전게서, p.74, p.175 참조.

름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차문제에 있어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받아들이는 내용 등을 추가한 개정이 1996년 8월 5일(대법원 승인일자)에 있었다.[9)]

(3) 2000년대 중재규칙 개정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에 시행되던 '중재법'이 UNCITRAL모델중재법을 반영하여 1999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도달주의 채택, 중재인의 부적격 고지 및 기피신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동시에 '상사중재규칙'이라는 명칭을 '중재규칙'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2000년 4월 27일(대법원 승인일자)에 있었다. 이후 '중재규칙'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바로잡고, 분쟁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며 소액사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등 중재제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개정이 2004년 12월 13일자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8년 11월 30일에도 KCAB 원장이 요금표상의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4) 2007년 국제중재규칙 제정

이 시기까지 KCAB에는 별도의 국제중재규칙이 없었고, 국내외 중재사건 모두 기존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제중재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국제수준의 중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국제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중재실무회에 국제중재규칙의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후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들을 검토하여 총 45개 조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중재규칙'을 완성하였다. '국제중재규칙'은 2007년 1월 25일자로 대법원 승인을 받아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중재규칙 개정의 필요성

2011년 개정 이전의 KCAB 중재규칙은 '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국제중재규칙'의 경우, 적용범위를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국제중재규칙'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중재규칙'이 국내중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10)]

9) 전게서, pp.176-177 참조.

또한 국제중재관행을 적용하길 원하는 이른바 대형 국제중재사건이 KCAB가 아닌 외국의 국제중재기관 등을 통하여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KCAB 및 더 나아가 대한민국 내 국제중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중재규칙'을 국제중재사건에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존 '중재규칙'은 '국내중재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중재사건에 적용하고, 국제중재사건은 전면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렇게 중재규칙을 국내와 국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SIAC와 같이 국내외사건을 하나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CIETAC과 같이 하나의 규칙 안에 '국내중재'를 따로 규정하는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재규칙이 이원화되면서, 중재합의에서 중재규칙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규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히 KCAB의 중재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제사건으로 구별하고, 국내중재이면 '국내중재규칙'이, 국제중재이면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 국제사건의 경우를 고려하여 국내중재사건에만 적용되던 신속절차 규정을 국제사건에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그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래에서는 국제중재규칙과 국내중재규칙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Ⅲ.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조항

(1) 국제중재의 정의

개정 이전 국제중재규칙(이하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국제중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의 기본적 원칙 이외에 추가적으로 '(a)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 및 (b)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다.[11]

그러나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이하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a) 당사자 간의 중재합

10) KCAB에서 2007년 '국제중재규칙'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사례는 2010년에 1건(철회로 종결), 2011년에 3건에 불과하였다.

11) '국제중재규칙 2007', 제2조.

의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를 '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b)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는 삭제되었다. 아울러 제5호를 신설하여 '영업소'란 '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거소'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12] 이는 국제중재사건에 대해 '국제중재규칙 2011'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내중재규칙'이 적용되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규칙 2011'이 적용되는 '국제중재'간의 상호 조화 및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KCAB와 마찬가지로 이원화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중재협회(AAA)의 경우, 국내중재는 'Commercial Arbitration Rules'를, 국제중재는 산하에 설치된 국제중재분쟁해결센터(ICDR)의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CDR은 국제중재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13] 국내·외 중재에 단일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 CIETAC의 경우에도 중재규칙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련 법규를 준용하고 있다.[14] 이와 같이 중재규칙에서 국제중재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중재의 적용범위를 과다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는 '실질적인 의무 이행지'나 '분쟁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의 개념을 삭제하고, '중재합의에서 규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구분 기준이 당사자의 영업소(상거소)를 기준으로 하여, 양당사자의 영업소(상거소)가 모두 국내인 경우에는 국내중재로, 당사자 일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는 국제중재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2) '국제중재규칙 2011' 제2조 제1호-5호.

13)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조 제3항. 국제중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할 당시 상이한 국가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다음 장소 중 어느 한 장소가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국외에 있는 경우. (ⅰ)중재합의에서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중재지, (ⅱ)상거래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어야 할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소.

14) 'CIETAC 중재규칙' 제3조에서는 관할 범위를 1)국제적 또는 섭외적 분쟁사건, 2)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과 관련된 분쟁사건, 3)국내분쟁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국제적, 섭외적 분쟁사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적사건은 AAA와 같이 'UNCITRAL모델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내국중재는 섭외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국내사건에 대한 중재를 가리키며, 섭외중재는 섭외요소가 있는 경제무역, 운수 및 해사(海事)행위 중에 발생하는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를 가리킨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중재법' 제65조). 여기서 언급된 섭외요소란 (1)당사자의 일방 이상이 외국인, 무국적자, 혹은 국제경제조직이거나, (2)분쟁의 목적물이 외국에 있거나, (3)분쟁을 야기한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발생, 변경 혹은 소멸에 관련된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였거나, (4)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요소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일부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92년 7월14일)참고.

⑵ 국제중재규칙의 적용범위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적용범위를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만을 규정하였으나,[15]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이에 더하여 ‘중재원의 중재로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 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에는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6]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중재규칙 혹은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할 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될 것이다. 즉, 영업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 당사자 간의 사건일 지라도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가능하다.[17] 그러나 적용 규칙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나(예를 들어, 중재원의 중재만을 명시), ‘중재원의 중재규칙’으로만 명시한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정의규정에 따라 영업소 소재를 기준으로 국내중재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중재규칙을, 국제중재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중재규칙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⑶ 국제중재위원회의 자문범위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국제중재위원회의 자문범위를 ‘이 규칙 제13조(중재인의 기피) 및 제14조(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제12조(중재인의 선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제중재위원회의 자문범위를 확대하였다.[18]

기존의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사무국이 후보자명단에 의한 중재인 선정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중재인선정 합의가 기존 후보자방식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무국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인 선정에 대한 자문이 많이 활용될 것이며,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 자질을 갖춘 중재인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문에 의한 중재인선정은 새로운 방식의 절차이니 만큼 세부적인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사무국과 국제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중재인선정을 자문대상으로 하여 신속절차의 경우에도 자문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성격과 분쟁금액

15) ‘국제중재규칙 2007’ 제3조 제1항.
16) ‘국제중재규칙 2011’ 제2조 제1항 제1-2호.
17) ‘국제중재규칙 2011’의 적용에 있어 중재인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적용을 받고 싶지 않은 당사자는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와의 거래일 지라도 ‘국내중재규칙’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는 진행될 것이다.
18) ‘국제중재규칙 2011’ 제1조 제3항.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명시하여 자문을 받는 사건을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19] 타탕하다고 보여 진다.

(4) 중재인의 수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단독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3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20] 그러나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인 또는 3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사무국의 판단 요소 중에 '당사자의 의사'를 새로이 규정하였다.[21]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3인 판정부가 가능한 경우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사무국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분쟁금액이 고액이고 사건내용이 복잡하여 3인판정부에 의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당사자의 요청이 없다면' 단독판정부에 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예는 '일본상사중재협회'만이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22]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IC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23] 다만, 사무국의 판단요소 중에 당사자의 의사를 새로이 첨가하여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국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4]

중재인 수에 대하여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는 '중재법'의 규정과[25]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2012년에 시행예정인 개정 'ICC 중재규칙'과[26] 2010년에 개정된 'SAIC 중재규칙'[27]에서는 단독 중재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 개정된 'UNCTRAL 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28]에서는 중재인의 수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19) '국제중재규칙 2011' 제1조 제3항.
20) '국제중재규칙 2007' 제11조.
21) '국제중재규칙 2011' 제11조.
22) '일본상사중재규칙' 제24.2조
23) 'Rule of Arbitration of the ICC' 제12조 제2항.
24) 이전 '국제중재사무처리규정'에서는 3인 판정부의 기준을 분쟁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분쟁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3인 판정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25) '중재법' 제11조 제1항-2항.
26)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CC' 제12조 제2항.
27) 'Arbitration Rules of SAIC' 제6조 제1항.
28) 'CIETAC 중재규칙' 제20조 제2항. 현재 개정안(3차 수정안)에서는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5) 중재인 선정방법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단독중재인 및 3인 판정부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29] 사무국이 3인 판정부로 결정한 경우의 선정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3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사무국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 한다'[30]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이 단독인 경우 및 3인인 경우, 그리고 중재인 수를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와 사무국이 결정한 경우 등 각 경우에 따라 중재인 선정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 중재인 수에 관하여 사무국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1인 또는 3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 경우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보완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2. 국제중재규칙의 신설조항

(1) 신속절차의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일반적 절차와 신속절차를 비교해보면 중재인 선정에 있어 그 선택권이 당사자 혹은 사무국에 주어지는가의 여부와 중재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중재인수당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KCAB에서는 국제중재에 대해서는 신속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신국내중재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1억원 이하 국내사건'에서만 신속절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31] 국제사건의 경우 모두 일반적 절차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새롭게 신속절차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이 장에서 정한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또는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32]과연 국제사건에 있어 신속절차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수 있지만, 소액 국제사건의 경우 국제중재절차에서 중재인선정의 어려움과, 절차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과다함에 따라 실제분쟁이 발생하고도 중재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 것

29) '국제중재규칙 2007' 제12조.
30) '국제중재규칙 2011' 제12조 제2항.
31) '중재규칙 2008' 제7장, '국내중재규칙 2011' 제8장.
32) '국제중재규칙 2011' 제6장 제38-44조.

으로 보인다.

신속절차는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33] 원칙적으로는 신속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의 증액신청에 의해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34] 그러나 2억 원을 초과해도 신속절차를 계속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되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신속절차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35] 또한 절차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비용부담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용 인하, 신청요금 면제, 중재인수당 인하를 사무처리 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36]

신속절차에 있어 신청금액 상한선은 각 기관마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가의 여부는 말하기 힘들다. 이미 신속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SAIC의 경우, 신청금액이 5백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5억)인데[37] 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AAA는 7만5천 달러(한화 약 9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신속절차를 적용하는 반면,[38] CIETAC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50만 인민폐(한화 약 9천만원)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에서는 200만 인민폐(한화 약 3억 5천만원)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39] KCAB가 새롭게 정한 2억원의 상한선이 소액 국제사건을 유치하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이다.

⑵ 신속절차의 중재인 선정

신속절차에서는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40조 제1항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40]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무국이 국제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으로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통하여 3인의 중재판정부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판정부에 의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41]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인 수와 중재인 선정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비용부담,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1인의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고,[42] 나아가 제12조에서

33) '국제중재규칙 2011' 제38조.
34) '국제중재규칙 2011' 제39조 제1항.
35) '국제중재규칙 2011' 제39조 제2항.
36) 그러나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신속절차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7) 'Arbitration Rules of SAIC' 제5조 제1항.
38) 'The A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Mediation 2010' E-2.
39) 'CIETAC 중재규칙' 제50조, 현재 개정안(3차 수정안) 제55조.
40) '국제중재규칙 2011' 제12조 제4항: 중재인 선정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의 경험, 일정,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1) '국제중재규칙 2011' 제40조 제1항-2항.
42) 그러나 당사자가 3인 중재인으로 합의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 중재인 수당 인하가 적용되지 않고 중재규칙상 중재인 수당표가 적용되어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므로 사무국은 이를 당사

중재인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특히 국적 고려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거주 중재인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신속절차의 구술심리절차

신속절차의 심리기일 일시·장소 결정과 통지방법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구술,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 및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3] 구술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종결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44] 이와 같이 신속절차는 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보다 간소화된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국내중재와 비교해보면, 국내중재에 적용되는 신속절차에서는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심리개시 3일전에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45] 국제중재의 신속절차에서는 통지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고, 대신 심리 종결 후 추가서면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4) 신속절차에서의 서면심리

신속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회의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46] 그러나 서면제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47]

이와 같이 서면심리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경비절감을 통해 국제중재 소액사건처리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 보여 진다. SAIC의 신속절차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서면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48] CIETAC은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49] 명시되어 있을 뿐 금액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제중재는 일방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경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신청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서면심리를 채택하면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절차진행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자에게 고지하고 단독중재인으로 합의하도록 권유토록 하였다.

43) '국제중재규칙 2011' 제41조 제1항.
44) '국제중재규칙 2011' 제41조 제2항.
45) '국내중재규칙 2011' 제58조 제1항.
46) '국제중재규칙 2011' 제42조 제1항.
47) '국제중재규칙 2011' 제42조 제2항.
48) 'Arbitration Rules of SAIC' 제5조 제2항 C.
49) 'CIETAC 중재규칙' 제54조,

⑸ 신속절차의 판정

신속절차는 판정기한 및 판정이유 기재에 관하여 일반절차와는 달리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50] 국내중재의 신속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판정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51] 이러한 규정은 신속절차의 판정기한이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비교적 짧고, 또한 신속절차에서의 중재인수당이 소액인 점과, 원칙적으로 영문로 판정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정이유 대신 이유의 요지(summary form)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문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국제중재규칙의 중재비용 조정

⑴ 관리요금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관리요금의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요금의 상한액을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관리요금 산정기준은 '국제중재규칙 2007'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지만, 신속절차 사건에 대해 관리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사무국이 관리요금표에 명시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52] 이는 ICC등 다수의 국제중재기관이 관리요금에 상한액을 설정[53]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⑵ 중재인 수당의 산정방식

중재인 수당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는 중재인 수당의 기본금액은 중재시간에 시간당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시간당 요율은 시간당 미화 250불에서 미화 500불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54] 반면,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중재인의 수당은 사무국이 분쟁의 성격과 분쟁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다.[55]

그동안 시간당 요율에 따라 계산하면 중재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중재인이 많은 수당

50) '국제중재규칙 2011' 제43조 제1항.
51) '국제중재규칙 2011' 제43조 제2항.
52) 구체적으로 인하된 실행요율은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였다('국내중재규칙'과 동일).
53) 외국중재기관 관리요금 상한 예: ICC(미화 113,215불), HKIAC(미화 26,850불), JCAA(14,700,000엔)
54) '국제중재규칙 2007', 별표Ⅱ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
55) '국제중재규칙 2011', 별표Ⅱ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ICC도 시간당 요율에 따른 수당 지급을 중재절차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사무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56]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재인 수당 산정방식을 개정했다고 보여 진다.

(3) 중재인 수당표 조정

중재인 수당표의 요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전 기준을 유지하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차이가 2-4배인 것을 대체로 4배 차이가 되도록 최소금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중재인수당이 최대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표 1>과 <표 2>참조)

이는 원칙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ICC의 예를 반영하여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의 차이가 4배수 정도를 유지하도록 최소금액 일부 하향 조정한 것이다. 중재인 수당에 대해서는 분쟁금액에 따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수당의 최고 한도액을 별도의 단서로 규정하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재인수당에 대해 최대금액을 규정한 예가 없다. ICC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당을 관련 요율보다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57] 그동안 중재인수당의 상한액으로 인해 외국 국적의 유능한 전문가가 KCAB 중재인으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중재인수당 상한액 철폐로 KCAB의 국제중재에서 더욱 많은 외국 중재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표 1> '국제중재규칙 2007'의 중재인 수당 산정표

	신청금액(원)	중재인 수당(원)	
		최소	최대
Ⅰ	50,000,000 이하	1,000,000	2,000,000
Ⅱ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1,000,000 * +2%x(신청금액-50,000,000)	2,000,000 +5%x(신청금액-50,000,000)
Ⅲ	1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000,000 +1%x(신청금액-100,000,000)	4,500,000 +3%x(신청금액-100,000,000)
Ⅳ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6,000,000 +0.75%x(신청금액-500,000,000)	16,500,000 +2.8%x(신청금액-500,000,000)

56) ICC의 관행: 당사자는 분쟁금액 구간별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사이의 평균금액을 중재인 수에 따라 납부. 3인 판정부내에서 중재인간 수당의 배분은 '의장:기타:기타'에 대해 '4:3:3'의 비율로 배분(이후 구체적인 조정 가능).

57)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CC' 제37조 제2항.

V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9,750,000 +0.25% (신청금액-1,000,000,000)	30,500,000 +1%x(신청금액-1,000,000,000)
VI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19,750,000 +0.1%x(신청금액-5,000,000,000)	70,500,000 +0.2%x(신청금액-5,000,000,000)
VII	10,000,000,000 초과 50,000,000,000 이하	24,750,000 +0.05%x(신청금액-10,000,000,000)	80,500,000 +0.1%x(신청금액-10,000,000,000)
VIII	50,000,000,000 초과	44,750,000 +0.02%x(신청금액-50,000,000,000)	120,500,000 +0.07%x(신청금액-50,000,000,000)
중재인 수당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표 2> '국제중재규칙 2011'의 중재인 수당 산정표

	신청금액(원)	중재인 수당(원)	
		최소	최대
I	50,000,000 이하	1,000,000	2,000,000
II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1,000,000 +1%x(신청금액-50,000,000)	2,000,000 +5%x(신청금액-50,000,000)
III	1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1,500,000 +0.75%x(신청금액-100,000,000)	4,500,000 +3%x(신청금액-100,000,000)
IV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4,500,000 +0.5%x(신청금액-500,000,000)	16,500,000 +2.8%x(신청금액-500,000,000)
V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7,000,000 +0.25%(신청금액-1,000,000,000)	30,500,000 +1%x(신청금액-1,000,000,000)
VI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17,000,000 +0.04%x(신청금액-5,000,000,000)	70,500,000 +0.2%x(신청금액-5,000,000,000)
VII	10,000,000,000 초과 50,000,000,000 이하	19,000,000 +0.025%x(신청금액-10,000,000,000)	80,500,000 +0.1%x(신청금액-10,000,000,000)
VIII	50,000,000,000 초과 100,000,000,000 이하	29,000,000 +0.015%x(신청금액-50,000,000,000)	120,500,000 +0.07%x(신청금액-50,000,000,000)
IX	100,000,000,000 초과	36,500,000 +0.007%x(신청금액-100,000,000,000)	155,500,000 +0.03%x(신청금액-100,000,000,000)
<단서 삭제>			

(4) 신속절차 사건의 중재인 수당

2억원 이하 신속절차 사건의 중재인 수당에 대하여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을 포함한 분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신속절차 사건에서 사무국이 선정하는 중재인에 대하여는 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58] 이 때문에 본신청과 반대신청을 합산하여 2억원 이하인 신속절차 사건에서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 해당 중재인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중재인 수당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처리규

58) '국제중재규칙 2011', 별표Ⅱ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제1조 제4항.

정'에서 정하는 별도의 인하된 수당표를 적용하여[59] 당사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Ⅳ. 국내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명칭 및 적용범위

'국내중재규칙 2011'은 기존의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 2008')에서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중재규칙 2008'은 1989년 11월 16일 대법원 승인에 의해 제정된 이래 5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8년 11월 13일(대법원 승인)에 최종 개정된 규칙이다. '국내중재규칙 2011'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재규칙 2008'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에 있던 국제중재에 관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선 수정된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재규칙 2008'에서는 그 목적을 '상사중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 명시하였으나, '국내중재규칙 2011'에서는 '국내중재'로 대체되었다.[60] 또한 국내중재란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한 '국제중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재라고 정의하고 있다.[61] 세계적인 중재기관의 경우에도 '국내중재'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AAA와 중국의 CIETAC을 들 수 있다. AAA는 중재규칙에서 'domestic commercial dispute'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62] CIETAC의 중재규칙에서도 국내중재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중재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63] 국제중재사건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국내중재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번 KCAB의 '국내중재규칙 2011'에서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여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적용범위도 신설되었는데,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혹은 당사자들이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내중재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64]

이상과 같이 용어와 명칭을 수정한 것은 국내중재사건은 '국내중재규칙 2011'을, 국제

59) 당사자 부담액에는 분쟁금액에 따라 0-70만원, 중재인 수당액(실수령액)은 40-110만원(중재원 지급 40만원 포함)이 될 것이다.
60) '중재규칙 2008' 제1조, '국내중재규칙 2011' 제1조.
61) '국내중재규칙 2011' 제2조.
62) 'The A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Mediation 2010' R-1 (a) 참고.
63) 'CIETAC 중재규칙' 제3조 제3항, 제5장 국내중재의 특별규정 참고.
64) '국내중재규칙 2011' 제3조.

중재사건은 '국제중재규칙 2011'을 적용한다는 개정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규정은 중재규칙이 이원화됨에 따라 각각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제중재규칙 2011'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방법

'중재규칙 2008'에서는 중재합의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의 중재인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사무국이 선정 한다'[65]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중재규칙 2011'에서는 이 중 '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부분을 삭제하였다.[66]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방식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대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3인 판정부 중 기타중재인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중 일방이 합의에서 정한 선정기한 내에,[67] 또는 선정기한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자기가 지명하여야 할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사무국이 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68] 이때 제21조를 준용하면, 어느 당사자가 자기가 선정하여야 할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당사자에게 후보자명단을 송부하고 양당사자의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지 않고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국제관례라는 점을 반영하여 '국제중재규칙 2007'에서 규정하고 있던 후보자 명단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중재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 명단의 제공 없이 사무국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65) '중재규칙 2008' 제20조 제3항.
66) '국내중재규칙 2011' 제20조 제3항.
67) '중재규칙 2008' 제20조 제2항 제3호.
68) '중재규칙 2008' 제20조 제2항 제4호.

3. 신속절차 중 신청금액 증액

기존의 '중재규칙 2008'에서는 신속절차 사건에서 1억원 이하인 국내중재의 경우 기준일 이후의 신청금액의 증액은 허용하지 않았다.[69] 그러나 '국내중재규칙 2011'에서는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중재의 경우, 중재절차 개시일 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70]

기존의 신속절차에서 신청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신청금액 증액을 무한정 허용하면 증액시점에서 신속절차를 유지하여야 할지 아니면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을 달리하는 일반절차로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일반절차로 전환하여 새로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면 기존의 절차가 무용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내중재규칙 2011'에서는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신속절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1억원까지의 증액은 허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중재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국내중재에 대한 신속절차의 적용범위가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AA와 CIETAC는 국내중재사건의 신속절차 과정에서 중재청구의 변경 또는 반대신청으로 인해 최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당사자와 중재인이 동의하면 신속절차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71] 증액에 대한 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국내중재에 대한 증액한도에 대한 폐지는 '국내중재규칙 2011'이 충분히 시행기간을 가진 후에 차기 개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9월부터 KCAB의 중재규칙은 '국제중재규칙 2011'과 '국내중재규칙 2011'로 이원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제중재규칙 2011'은 국제중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국제중재규칙 2007'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제중재의 정의와 적용범위 등이 새롭게 명시되고,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 중재비용 등에도 일부 수정이 있었고, 신속절차가 신설되었다. '국내중재규칙 2011'에서는 기존의 '중재규칙 2008'을 수정하여 이원화 체계에 부합되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중재인 선정방법, 신속절차 중 신청금액 증액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국제중재규칙 2011'과 비교해보면 우선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에만 적용할 수 있다

69) '중재규칙 2008' 제56조.
70) '국내중재규칙 2011' 제56조.
71) 'The A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Mediation 2010' E-2, 'CIETAC 중재규칙' 제50조와 제59조 참고.

는 점이 다르다. 또한 중재절차에서 답변서 제출, 중재인 선정, 심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제출 또는 통지기한이 국내중재는 15일, 국제중재는 30일 이내이고, 신속절차의 신청금액 기준이 각각 1억원 이하와 2억원 이하라는 차이점이 있다. 신속절차에 있어서도 국내중재는 1억원을 초과하는 증액을 허용하지 않지만, 국제중재는 2억원을 초과해도 당사자가 합의하고 판정부가 승인하면 신속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KCAB의 개정된 규칙들은 2011년 9월 1일 이후에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한하여 적용된다.[72] 접수일이 아닌 합의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개정된 국내 및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수년내에 개정된 규칙으로 대부분의 KCAB의 중재사건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중재규칙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정된 규칙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향후 KCAB의 국내외 중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번 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외에서 중재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대한상사중재원,「상사중재 3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1996.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8.

박양섭,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인도중재원 중재규칙 비교 연구”,「무역상무연구」, 제3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

서정일,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pp.22-2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2008년)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2011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07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년)

72) ‘국내중재규칙 2011’ 및 ‘국제중재규칙 2011’ 부칙 적용례 참조.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CC'(2010)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rbitration Rules of SAIC'(2010)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IETAC 仲裁規則'(2005)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IETAC 仲裁規則 征求意見稿三'(2011)
UNCTRAL 모델중재법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Mediation'(2010)

ABSTRACT

A Study on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ae-Hoon Kim
Kyung-Ja Cha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amend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the 'Arbitration Rules', which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1, 2011. Under the amendment, the 'Arbitration Rules' will be referred to as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and in principle apply only to domestic arbitration cases. Accordingly, the amendment removed all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 addition, under the amendment,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ill automatically apply to all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amend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stablish new expedite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before the KCAB. The KCAB has also instituted additional changes relat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cluding reduction in the filing and administrative fees and appointment of prominent international foreign arbitrators on its panel. The remuneration for arbitrators has also increased to bring them more in line with the fees provided by other lea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While several problems remain, these most recent revisions must be seen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KCAB.

Key Word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Domestic Arbitration Rules, Expedited Procedure, Arbitration costs.